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1042호 2018. 10. 26. (금)
 시화-철쭉
  시조-갈매기
  시목-노티나무

고 시

○ 삼척시 고시 제12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----- 2

공 고

- 삼척시 공고 제81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----- 4
- 삼척시 공고 제81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----- 5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18 - 123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제24조,제25조에 의거
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
 합니다.

2018. 10. 26.

삼 척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144 외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 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~9)에
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
 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10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
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
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
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
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
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
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	
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9-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144	20181026	건물신축	20090807	자연지형명칭 반영(산맥)	
2	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136	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561-6	20181026	건물신축	20090626	지형지물(가곡천)명칭활용	
3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-14, 3-13, 3-36	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6	20181026	건물신축	20090626	행정구역,시설물(항구)복합활용	
4		이	하	여	백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
삼척시 공고 제2018-810호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장소 :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2. 공고기간 : 2018.10.22. ~ 2018.11.05. (15일간)
3. 말소(예정)일자 : 2018.11.06.
4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김재○
	주소 (대장상주소)	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대장 철거·멸실	
라. 처분하고자한 내용	건축물대장 말소	
	지번 :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당곡리 545 목조 (1층:28.42㎡ 단독주택)	
마.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

5. 유의 사항
 - 가.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(청)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(☎033-570-39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0. 22.

삼 척 시 장

삼척시 공고 제2018-813호

「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3일
삼척시장

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**1. 제안이유**

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, 지역진흥 시책·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, 이러한 재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단의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재정지원(안 제2조)
- 다.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(안 제3조)
- 라. 출연금의 지급(안 제4조)
- 마.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의견
- 라. 의견 제출 및 문의처
 - 주 소 : (우25914)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전략사업실
 - 전 화 : 033-570-4033
 - 팩 스 : 033-570-3186

삼척시 조례 제 호

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지원) 삼척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국지역진흥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(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)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3. 예금 잔액증명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.

제4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